

의안번호	2201545
의 퇴 인	김영호 의원
회 답 일	2024.08.05.
추계번호	24C1793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 (대학의 장의 임용)	(제8항) 추천위원회는 직접·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거쳐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(제9항) 해당 대학의 교원, 직원(조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학생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직·정직 중인 교원 및 직원과 휴학·정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. (제10항)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. 다만,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투표반영비율(총 투표 결과에 대하여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투표 결과가 환산 및 반영된 비율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협의를 거쳐 정하되,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. (제11항) 교원, 직원 및 학생별 각 투표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대학의 장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다. (제12항) 그 밖에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	재량규정
2	안 제24조의3 (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)	(제1항) 제24조제8항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의3 (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을 위한 임용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직접·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되, 해당 선거관리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
 - 현행법은 추천위원회로 하여금 ‘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해당 대학 교원,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’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
 - 이에 대학 교원 등이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실시되던 선거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선거로 바뀌게 됨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시 실시되는 선거가 증가하여 선거관리 위탁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이는 선거방식, 선거인수 및 투표인 수, 선거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면 선거관리 경비는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, 위탁선거 제도·홍보,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와 재해준비보상금 등으로 구성됨
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'20년부터 '24년 7월까지 총 46건 국립대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관련 위탁선거가 시행되었으며, 투표인원과 납부비용 등에서 다양한 분포를 나타냄
 - － 해당 선거들의 투표인원은 최소 533명(한밭대학교)에서 최대 24,385명(전북대학교, 1~3차 선거 합산)이었고, 납부비용은 최소 12,624천원(한국해양대학교)에서 최대 79,640천원(경북대학교)이었으며, 투표인원 1명당 비용으로 환산시 최소 1.5천원(전북대학교)에서 최대 56.84천원(한국체육대학교)으로 계산됨
 - 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선거실시 형태(온라인투표 또는 종이투표인지 여부), 선거인원과 투표인원, 선거기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함¹⁾

1) 선거방식(온라인투표 또는 종이투표) 및 선거기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(국립대학)와 협의하여 결정

- 개정안에 대한 추계를 위해서는 추계기간 동안의 국립대학의 장 선거 횟수²⁾와 각 선거에서의 위탁비용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나, 위탁선거의 실시형태 등에 따라 그 비용이 다르게 나타나며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일률적 가정이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 비용추정이 곤란함
- 이에 개정안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

2) 참고로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8조에 따라 대학 장의 임기는 4년이며, 2024년도 중 (7월 이후) 임기가 만료되는 국립대학교의 장은 총 37개 국립대학 중 부경대학교와 경북대학교의 장으로 총 2개 직위임